

82

102

기안자	상공과 신무중	전화번호	2-6378	공보	필요	불필요
상정담당	상공과장	산업국장	제 / 부시장	시	장	
	<b>대결</b>					
협조자	본	총무과	보	존	한	
서명	법	시정과	내무	통	계	관
기안월	64. 8. 6	시행월	64. 8. 6	통계관	1275	
분류기호	1343.22					
경수참	유신조	각안	참조	발신		
제목	석유류판매가격 개정					
<p>안) 상공연 1343.22~1049(64. 8. 3)호의 상공  부장관 통첩에 의하여 양시 석유류 가격을  석유운영규정 제 23조에 의거 고시하고자  의 함 이 라. 관 본 가 격 은 1964 7. 8  도급 실시 함</p>						
유종	포괄	라	개정가격	종전가격	증	비
휘발유	산유	200L	4.147	5.394	1247	
	도관		4.172	5.517	1339	
등화유	산유		1.950	1.920	20	
	도관		1.928	2.005	27	
경유	산유		1.701	1.720	19	
	도관		1.730	1.755	25	

고시

확시  
확정  
인  
일

54

서 46 특별시

중 우 산 우	200ㄷ	1.394	1.282	112	
· 도 램	"	1.423	1.314	109	
회 받 우	20ㄷ	460	600		140 주유소 판매가액
경 우	"	200	200		
등 화 우	1ㄷ	11	11		가정용 등화 우 판매가액

(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제 848호

1964. 8. 3 상광연 1343.22~1049에 의하여 대한 석유공사 제품 판매가격이 변동되었으므로 석유운영규정 제 23조에 의하여 당시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1964. 7. 8 부터 소급 실시한다.  
 관 2안 가수로 징수한 가격과 본가격과의 차액은 즉시 환불 조치한다.

사기 1964. 8. 6

서울특별시장 윤치영

유 종 포 장	관 위	판매가격	비 고
회 받 우 산 우	200ㄷ	4.47	왕십리 창고 가격
· 도 램	"	4.78	"
등 화 우 산 우	"	1.950	"
· 도 램	"	1.978	"
경 우 산 우	"		

57

경 우	도 감	2001	1,730	황십리 참고 가격
중 우	산 우	.	1,394	,
"	도 감		1,423	,
회 발 우		201	460	주유도 판매 가격
경 우		.	200	,
등 화 우		11	11	가정용 등화우 판매 가격

기타 기계류는 원가 + 판매수위로 (종전 수위로 고정) + 누손료 (사업초가의 2%) + 우송부채비를 합산한 금액임. (관 포장 되어 도입되는 석유류는 미러병 (1 닷 kg)에 의하여 환산하되, 소수점이하 3위까지만 계산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3 단)

수신, 수신처 참조                      발 신      지 강  
 제 목      등      건

1964. 8. 3      광 광 연      1,343.22 ~ 1,049 에 의하여  
 대한석유공사 제 목      판매 가격 이      변동 되었 으므로      광 시 의  
 판매 가격을      별 지 고 시 와      같이      개정 하였 으니      통 보  
 함 니 라.

우 원      고 시 문      1      등      끝  
 우 신 처      상      관      부 산 지 강      각 도 지 사

시 운 관  
 8/6 15.00



수신 공보실장

발신 상공과장

제목 등 건

1964. 8. 3 상공연 1343.22~1049 미 의하여  
대한석유공사 제물판매가격이 변동되었으므로 양사의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시보에 게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고시문 1통 끝.

고시방법 시 게시관 열 각 주령 게시관에게 고시 함.

석유류 환매가액 산출표 (2001)

유종	도량	사업원가	판매인수수료	누손료	수송부대비	도량조작비	계	결정가액
회발유	3.840	3.840	65	76.90	63.90		4,147.35	4,147
" 도량	3.840	3.840	71.42	76.90	63.90	26	4,178.12	4,178
등유	1.602	1.602	33.40	32.04	18.2		1,949.55	1,950
" 도량	1.602	1.602	36	32.04	18.2	26	1,978.55	1,978
경유	1.450	1.450	20.80	29	47		1,701.27	1,701
" 도량	1.450	1.450	23.40	29	47	26	1,729.27	1,730
중유	1.038	1.038	83.90	20.76	25.1		1,393.36	1,394
" 도량	1.038	1.038	86.40	20.76	25.1	26	1,422.56	1,423

기타 기계유는 원가 + 판매인수수료 (종전수수료 고정) + 누손료 (사업원가의 2%) + 수송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인 (라 도량의 여 도입되는 석유류는 비리범 (1 및 kg) 이하의 환산하되 5수전 이하 3위 까지만 계산하여 기격을 산출한다.

2. 주유소 판매가액 산출표

유종	원가	사업원가	수수료	누손료	부대비	계	1사	20사	비고
회발유	4,178	331.12	83.68	38	4,630.58	23.15	23	460	원미반사사구입
경유	1,730	140.40	34	38	1,942	9.20	10	200	

3. 가정용 등화유 판매가액 산출표

유종	사업원가	판매인수수료	누손료	부대비	계	1사	결정가액	비고
등화유	1,978	120.30	59.34	56	2,213.64	11.06	11	원미반사사구입

상공부 고시 제 1340 호

1. 대한석유공사의 석유류 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곡같이 정하여 이를 1964. 7. 8부터 실시할것을 대한  
 석유공사법 제 29 조 및 석유운영규정 제 23 조 규정  
 준용하여 고시한다.

유종	도량	단위	판매가격	비고
휘발유	살유	릿타	19.20 원	석유류세 9.60 포함
등유	"	"	8.01	
경유	"	"	7.25	
중유	(철도용) (일반용) 살유	"	4.61	
		"	5.19	
		"	8.06	
솔벤트	"	"	12.55	
아스팔트	"	"	9.35	
액화석유가스	"	Kg	23.13	
방카 C	"	릿타	4.19	

2. 전기한 가격은 살유가격이며 드럼에 포장할때  
 에는 전기가격에 드럼 주입비 릿타당 13전을 추가징수  
 한다 단 아스팔트에 대한 주입비는 추후 고시한다.

1964년 8월 3일

상공부장관

61

박

52층

문

상 공 부

상 광 연 1343.22-104P

1964. 8. 3.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대한석유공사 제품판매가격

1. 1964. 7. 11 상 광 연 1343.22.-912(티.티) 와 관련된 사항임.

2. 대한석유공사 석유류 판매가격을 유첨 과같이 고시 하였으니 석유운영규정 제 23 조에 의거 귀도(시) 판매가격을 고시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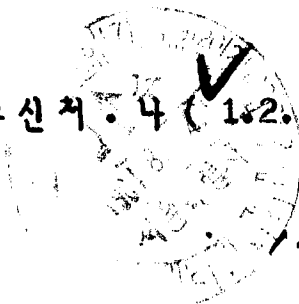
3. 정부의 저물가 정책 수행을 위하여 귀도(시) 수 수수료는 사입원가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별도지시 있을 때까지 현행 수수료를 우선 금액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4. 1964. 7. 8 법률제 1648 호 석유류 제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대한석유공사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유첨. 상공부고시제 1340 호. 갈

상공부장관 박 중

수신처. 나 ( 1.2.3.4.5.6.7.8.9.10. 11 )



13256

60

